

제259회 임시회
2007. 4. 24(화)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7. 4. 24.(화)
제 259회 임시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민경환 의원외 7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4월 9 일

○ 회부일자 : 2007년 4월 11 일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7.4.18)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내용 중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나. 주요내용

-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안 제1조).
-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 하도록 함(안 제7조).
-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신순섭)

-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는 1997년 7월 4일 조례 제2332호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 1997년 제정 시행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시행되어 그 동안 변경된 관련 법령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 제8호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부분이 1994년 12월 22일 시행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825호에서 당시 중앙행정기관인 “상공자원부장관”으로, 1997년 12월 13일 시행된 같은 법 제545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되었고, 1994년 12월 23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447호에서는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1996년 2월 9일에 시행된 시행령 제14909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으로, 경기도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을 둘어 “중앙행정기관”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표시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을 포함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 삭제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예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 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 민법	제2조(법인격 및 명칭) —— 「민법」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 ——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 ——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략)</p> <p>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p> <p>5. ~ 7. (생략)</p> <p>8. 통상산업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p> <p>9. (생략)</p> <p>제9조(재산출연 등)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p> <p>5. ~ 7. (현행과 같음)</p> <p>8.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p> <p>9. (현행과 같음)</p> <p>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p>

관 계 법령 발 휘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예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